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심사보고서

충청북도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충청북도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84
----------	-----

2017. 4. 28.(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7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4월 20일

-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

가.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생활체육진흥법」제11조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위탁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 위 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7번길 59-9(방서동)
- 위탁 계약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
- 위탁방법 : 위원회 심사 후 재위탁 또는 신규공모
- 운영예산 : 시설운영수익으로 충당(위탁경비 미지원)
- 위탁 주요사무
 - 도 단위 체육단체 및 회원종목단체 사무실 제공
 - 체육시설 사용료 등 수입 통한 도내 체육진흥사업비 조성
 - 기타 도지사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검토보고 요지

- 이 동의안은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위탁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충청북도 체육회관은 충청북도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해 오고 있으며(1995년~2017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충청북도 체육회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이견이 없음.
- 충청북도 체육회관은 월 등록회원이 약 600여명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6항에 근거하여 위탁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운영예산을 체육회관 시설운영 수익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다른 민간위탁 시설과는 다르게 충청북도 체육회관의 운영 수입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점검, 지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안번호	제 584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7년 4월 11일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84
----------	-----

제출연월일 : 2017년 4월 1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위탁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 위 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7번길 59-9(방서동)
- 위탁 계약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
- 위탁방법 : 위원회 심사 후 재위탁 또는 신규공모
- 운영예산 : 시설운영수익으로 충당(위탁경비 미지원)
- 위탁 주요사무
 - 도 단위 체육단체 및 회원종목단체 사무실 제공
 - 체육시설 사용료 등 수입 통한 도내 체육진흥사업비 조성
 - 기타 도지사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現,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현황

- 위 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7번길 59-9(방서동)
- 규 모 : 부지 5,314㎡, 건축연면적 4,856.03㎡ (지하2, 지상4)
- 수탁기관 : 충청북도체육회(2014. 3. 1. ~ 2017. 2. 28.)
- 운 영 비 : 시설운영 수익으로 충당(위탁경비 미지원)

○ 주요업무

- 도 단위 체육단체 및 회원종목단체 사무실 제공
- 체육시설 사용료 등 수입 통한 도내 체육진흥사업비 조성
- 기타 도지사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직·인력 : 23명(사무처장 1, 본부장 1, 부장 5, 직원 16)

○ 이용현황 : 등록회원 600명(월) ※ 1일평균 이용인원 200명정도

○ 충북체육회관 운영경과

- 1995. 7. 31. 충북체육회관 준공(총사업비 2,720백만원)

※도비 1,500, 교육청 100, 체육회기금 500, 도민성금 620

- 1995. 9. 30. 기부채납(충북체육회→충청북도)
- 1995. 9. ~ 2008. 2. 충북체육회 무상사용(12년 5개월)
- 2008. 3. ~ 2011. 2. 충북체육회 위탁운영
- 2011. 3. ~ 2014. 2. 충북체육회 위탁운영(1회 갱신)
- 2014. 3. ~ 2017. 2. 충북체육회 위탁운영(2회 갱신)
- 2017. 3. ~ 2020. 2. 충북체육회 위탁운영(3회 갱신)

나.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 (관리 및 위탁운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생활체육진흥법

- 제11조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23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제2항·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제21조에 따라 위탁범위와 위탁기간, 연간 위탁료(사용료 포함)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제8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한다.

□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제4조 (관리 및 위탁운영)** ① 충청북도체육회 등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체육회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받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와 위탁운영을 갱신할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갱신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